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중기지방재정계획

-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영덕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.

❖ 연도별 재정전망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2022	합 계	연평균 증가율
세 입	398,401	412,492	427,173	442,449	467,180	2,147,695	4.10
자 체 수 입	50,332	52,505	54,770	57,126	59,577	274,310	4.30
이 전 수 입	258,395	268,623	279,273	290,349	310,812	1,407,452	4.70
지 방 채	8,700	9,110	9,539	9,988	10,458	47,795	4.70
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80,974	82,254	83,591	84,986	86,333	418,138	1.60
세 출	398,401	412,492	427,173	442,449	467,180	2,147,695	4.10
경 상 지 출	72,854	74,115	75,991	77,968	79,794	380,722	2.30
사 업 수 요	325,547	338,377	351,182	364,481	387,386	1,766,973	4.40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공기업, 기타), 기금
- ▶ 연평균 증가율 = $[(\text{최종연도}/\text{기준년도})^{1/(\text{전체연도 수} - 1)} - 1] \times 100$

4-2. 성인지 예산현황

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☐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영덕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48	16,968
여성정책추진사업	10	1,431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32	11,797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6	3,740

▶ 2018년 당초예산 기준

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영덕군청 : <http://www.yd.go.kr>)

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3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덕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델
407,736	5,233	1

▶ 2018년 당초예산 기준

❖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지 원 기 타 부 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 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 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 칙

❖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반영액	비고
총 액			
안전재난건설과	소규모 주민숙원사업	2,368	신규·계속 사업
안전재난건설과	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	2,865	신규·계속 사업

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영덕군청 : <http://www.yd.go.kr>)

4-4. 성과계획서

- 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☐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영덕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실국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단위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지표수				
계	16	75	192	149	382,414	345,290	37,124
의회사무과	1	1	2	2	984	780	204
기획감사실	1	3	7	7	17,386	12,441	4,945
주민복지과	1	10	27	18	71,027	61,087	9,940
자치행정과	1	4	13	9	19,380	19,342	38
종합민원차과	1	2	5	7	4,115	3,200	915
재무과	1	3	6	6	33,030	31,640	1,389
문화관광과	1	3	6	6	19,942	20,508	△566
새마을경제과	1	10	25	15	56,781	54,919	1,862
환경위생과	1	5	9	7	10,271	8,246	2,025
해양수산과	1	4	12	8	18,730	20,777	△2,047
산림자원과	1	4	8	7	9,147	8,727	420
안전재난건설과	1	8	25	15	45,280	27,304	17,976
보건소	1	2	6	7	7,833	10,773	△2,939
농업기술센터	1	6	20	20	28,506	30,040	△1,534
맑은물사업소	1	1	4	4	22,545	23,539	△994
시설관리사업소	1	9	17	11	9,702	4,218	5,484
영덕읍	-	-	-	-	1,232	1,141	91
강구면	-	-	-	-	867	899	△32
남정면	-	-	-	-	892	749	142
달산면	-	-	-	-	762	705	57
지품면	-	-	-	-	759	939	△180
축산면	-	-	-	-	855	895	△40
영해면	-	-	-	-	926	898	28
병곡면	-	-	-	-	819	894	△75
창수면	-	-	-	-	645	629	16

- 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- 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영덕군청 : <http://www.yd.go.kr>)

4-5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11.44	61.96	22.01	27.01	52.38	148.08

- 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- 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영덕군청 : <http://www.yd.go.kr>)

4-6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(총액)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90	53	-
	부단체장		37	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15	200	-15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114	55	-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	44	
	의원국외여비		15	
지방보조금		17,476	17,962	486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713	713	-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-	870	-
공무원 일·숙직비		-	313	-

☞ **업무추진비 관련 경비 산출**
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 : 군수 52,800천원, 부군수 37,000천원
- 시책추진업무추진비 : 2018년 기준액 215,000천원

☞ **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출**

- 의정운영공통경비 : 의원 1인당6,900천원 × 7명, 특별위원 1,000천원 × 7명 = 55,300천원
- 의회운영업무추진비 : 의장 2,100천원 × 12월 + 부의장 1,050천원 × 12월 + 특별위원장 1,000천원 × 1명 × 6회 = 43,800천원
- 의원국외여비 : 의원 1인당 2,100천원 × 7명 = 14,700천원

☞ **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: 1인당 기본수당 월 200천원, 회의참석수당 20천원, 반장수당 50천원**

- 통·리장 : 기본수당 월200천원, 상여금 연200%, 회의참석수당 1회 20천원(월2회)
- 반장 : 월50천원

☞ **맞춤형복지제도 : 지침 기준액은 1인 1,290천원이나 예산편성은 1인 1,160천원으로 편성하였음.**

☞ **공무원 일·숙직비 : 1인당 50천원 / 재택당직 1인당 30천원**

- ※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,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.
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'을 참조하세요(<http://lofin.mois.go.kr/portal/main.do>)